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남영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2014. 7. 2.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란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동으로 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인정되는 자격증 시험은 변리사시험·법무사시험·세무사시험·관세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공인노무사시험으로 총 6개이다. 이 중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만을 면제해주고 있고, 그 나머지 시험의 경우는 경력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독일·미국 등이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변리사법, 세리사법, 통관업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무와 연관성 있는 과목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세무사법에서만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변리사시험에 대해서만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요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구체화되어 있다.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시험면제요건이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시험면제의 형태도 과목 중심이 아닌 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시험면제라는 광범위한 혜택에 비하여 시험결격요건이 경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면제요건을 ‘근무기간 중심’이 아닌 ‘업무중심’으로 변경하고, 시험면제방식을 ‘시험 전체의 면제’가 아닌 ‘경력과 관련된 과목중심의 면제’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파면 또는 해임’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시험결격요건을 강화하여 경징계의 경우에도 시험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 4

1. 변리사	4
2. 법무사	8
3. 세무사	13
4. 관세사	18
5. 공인회계사	24
6. 공인노무사	28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34

III. 외국의 입법례 / 37

1. 일본	37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7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39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40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41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42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43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44
-----------------------------	----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 46

1. 문제점	46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요건과 광범위한 면제	46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48
2. 개선방안	49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49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51

V. 결론 / 52

☐ 참고문헌

☐ 부록: 관련 해외 법률

표 차례

[표 1] 변리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6
[표 2] 변리사 시험 경쟁률	7
[표 3] 변리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8
[표 4] 법무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10
[표 5] 법무사 시험 경쟁률	11
[표 6] 법무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12
[표 7] 세무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15
[표 8] 세무사 시험 경쟁률	16
[표 9] 세무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17
[표 10] 관세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21
[표 11] 관세사 시험 경쟁률	22
[표 12] 관세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3
[표 13] 공인회계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25
[표 14] 공인회계사 시험 경쟁률	26
[표 15] 공인회계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7
[표 16] 공인노무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31
[표 17] 공인노무사 시험 경쟁률	32
[표 18] 공인노무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33
[표 19]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34

I. 서론

-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동으로 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라 함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행정부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관련 법률 제정당시에는 자동자격부여의 방식으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운영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음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1960년대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고, 1984년에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1995년에 제정된 「관세사법」으로 확대되었음
- 「법무사법」의 경우는 경력공무원 대상자를 점차 늘리는 형태로 개정되어 왔음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1999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동자격 부여방식에서 시험일부면제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¹⁾ 이후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통하여 2001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1) 이 제도 개선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졌음

- 당시 규제개혁은 ‘대국민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목적에 따라 전문자격사 제도가 규제대상으로 선정됨²⁾
- 자동자격부여 방식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면이 강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시험면제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함
- 2001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음
 - 이 제도가 공무원에 대해 지나친 혜택을 주고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임
 - 이 제도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속 제기되었음³⁾
 -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임종인 의원 대표발의)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각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 현재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국민의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 해소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9, 2000

3) 2000헌마364, 2000헌마84, 2007헌마1149, 2007헌마956

- 또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청년 실업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실질적 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점검해보고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자격시험별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와 현황

1. 변리사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변리사법」 제4조의34)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됨
- ☐ 즉 특허청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인 4과목이 모두 면제됨
- ☐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5)에 따르면, 변리사 1차 시험

4)제4조의3 (시험의 일부 면제) ①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별표 1]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제1차 시험(4과목)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로 4과목임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4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시험과목은 응시자가 선택한 필수과목 1개와 선택과목 1개임)
- 변리사 2차 시험의 면제과목을 변리사법 시행령 본문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표의 비고로 정하고 있음

나. 시험면제자 현황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면제 응시자는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1차 시험 면제자가 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없었고,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과목 일부를 면제받은 자만이 시험에 응시하였음

제2차 시험(4과목)

가. 필수과목 (3)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나. 선택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비고 :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차 시험의 과목은 제2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한다.

[표 1] 변리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단위 : 명)

연 도 ⁶⁾	1차 시험 면제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면제자	최종 합격자
2006	0	10	0
2007	0	11	1
2008	0	65	14
2009	0	97	24
2010	0	218	43
2011	0	202	40
2012	0	176	30
2013	0	149	21

자료 : 특허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 변리사 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경쟁률은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음
- ☐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이상이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은 5:1 이상임

6) 시험면제제도는 2001. 1. 1.자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되어 2006년부터 일부과목
면제자가 발생

[표 2] 변리사 시험 경쟁률

(단위 : 명)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6	5,627	790	7.2:1	1,807	225	8:1
2007	5,509	606	9:1	1,793	202	8.9:1
2008	4,595	644	7:1	1,525	219	7:1
2009	4,310	626	6.9:1	1,260	226	5.6:1
2010	4,821	605	8:1	1,371	244	5.6:1
2011	4,609	627	7.4:1	1,367	240	5.7:1
2012	4,450	604	7.4:1	1,321	235	5.6:1
2013	4,222	620	6:1	1,288	222	5.8:1

자료 : 특허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변리사 시험의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과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을 비교하면 [표 3] 과 같음)

○ 2006년을 제외하고는 시험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이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보다 높음

7)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은 (2차 시험 합격자/1차 시험 원서접수자)×100을 적용하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은 (최종합격자/1차 시험 면제자 +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100을 적용하였음. 이하 표6, 표9, 표12, 표15, 표18에서 동일한 산식을 적용함

[표 3] 변리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단위 : %)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6	4	0
2007	3.7	9.1
2008	4.8	22
2009	5.2	25
2010	5.1	20
2011	5.2	20
2012	5.3	17
2013	5.3	14

자료 : 특허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2. 법무사

가. 법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법무사법」 제5조의28)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 공무원

8)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

경력이 있는 경우 법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법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법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법무사 2차 시험 과목 일부가 면제됨
- 즉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의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인 4과목(9종류의 법)이 모두 면제됨
- 「법무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9)에 따르면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은 제1과목 헌법과 상법, 제2과목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별표 1]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2항 관련)

제1과목	헌법(40), 상법(60)
제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제3과목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 등기법과 공탁법 등 4과목으로 총 9종류의 법임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4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법무사규칙」 제4조의2 제1항¹⁰⁾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제1과목인 민법, 제2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면제됨(총 3개 법률 면제)
- 「법무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2¹¹⁾에 따르면, 법무사 2차 시험 과목은 제1과목 민법, 제2과목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3과목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으로 구성되고 총 7종류임

나. 시험면제자 현황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면제자 수에 비하여 최종 합격 인원은 현저히 떨어짐
- 2008, 2010, 2011년에서만 각 1명씩 최종 합격하였음

[표 4] 법무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10) 제4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이라 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11)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제4조제2항관련)

제1과목	민법
제2과목	형법(50)·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소송법(70)·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단위 : 명)

연도	1차 시험 면제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	최종 합격자
2007년	4	0	0
2008년	18	0	1
2009년	15	3	0
2010년	15	4	1
2011년	12	3	1
2012년	8	3	0
2013년	11	8	0

자료 :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법무사 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경쟁률은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음

○ 1차 시험의 경쟁률은 8:1 이상이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은 5.7:1 이상임

[표 5] 법무사 시험 경쟁률

(단위 : 명)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7	4,811	386	12.5:1	729	121	6:1
2008	4,340	364	12:1	723	120	6:1
2009	4,266	382	11.2:1	711	120	5.9:1
2010	4,100	385	10.6:1	713	121	5.9:1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11	3,798	370	10.3:1	690	121	5.7:1
2012	3,511	373	9.4:1	698	121	5.8:1
2013	3,226	371	8.8:1	715	120	6:1

자료 :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 법무사 시험의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과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을 비교하면 [표 6] 과 같음
- 2008, 2010, 2011년에는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보다 시험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이 높음

[표 6] 법무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단위 : %)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7	2.6	0
2008	2.8	5.6
2009	2.8	0
2010	3	6.7
2011	3.2	6.7
2012	3.5	0
2013	3.7	0

자료 :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3. 세무사

가.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세무사법」 제5조의2(12)에 따르면,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12)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세무사 2차 시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과목이 면제됨

- ☐ 즉, 국세청 공무원 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인 6과목이 모두 면제됨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별표 113)에 따르면,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회사편),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선택과목 1과목, 영어로 총 6과목임
-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6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제2항14)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인 세법학 1

13)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과목	출제범위
1. 재정학	
2. 회계학개론	
3. 세법학개론	가. 「국세기본법」 나. 「국세징수법」 다. 「조세범처벌법」 라. 「소득세법」 마. 「법인세법」 바. 「부가가치세법」 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 상법	회사편
5.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 1	가. 「상법」 (회사편) 나. 「민법」 (총칙) 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6. 영어	

14) 제1조의5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부, 세법학 2부가 면제됨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별표 215)에 따르면,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로 총 4과목임

나. 시험면제자 현황

- ☐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면제자의 합계는 1000명 이상이고, 최종 합격자도 매년 100명 이상임

[표 7] 세무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단위 : 명)

연도	1차 시험 면제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	최종 합격자
2003년	459	1,053	276
2004년	495	910	191

15)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과목	출제범위
1. 세법학 1부	가. 「국세기본법」 나. 「소득세법」 다. 「법인세법」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세법학 2부	가. 「부가가치세법」 나. 「개별소비세법」 다.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라. 「조세특례제한법」
3. 회계학 1부	가. 재무회계 나. 원가관리회계
4.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연도	1차 시험 면제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	최종 합격자
2005년	412	822	167
2006년	386	713	122
2007년	353	655	128
2008년	625	633	175
2009년	441	640	101
2010년	515	627	130
2011년	582	656	103
2012년	621	672	154
2013년	872	869	103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 세무사 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경쟁률은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음
- ☐ 1차 시험의 경쟁률은 3:1 이상이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은 3:1 이상임

[표 8] 세무사 시험 경쟁률

(단위 : 명)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3	8,022	935	8.6:1	4,183	717	5.8:1
2004	9,094	819	11.1:1	3,637	702	5.2:1
2005	8,818	1,743	5.1:1	4,247	706	6:1
2006	8,281	684	12.1:1	3,798	704	5.4:1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7	8,291	516	16.1:1	2,571	706	3.6:1
2008	7,869	756	10.4:1	2,591	633	4.1:1
2009	3,820	968	3.9:1	3,107	631	4.9:1
2010	5,494	1,710	3.2:1	4,107	640	6.4:1
2011	7,198	1,374	5.2:1	4,477	630	7.1:1
2012	7,842	1,429	5.5:1	4,392	654	6.7:1
2013	8,350	2,196	3.8:1	5,079	631	8:1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 세무사 시험의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과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을 비교하면 [표 9] 와 같음
- ☐ 세무사 시험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과 비교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시험 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이 높음

[표 9] 세무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단위 : %)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3	8.9	18.2
2004	7.7	13.6
2005	8.0	13.5
2006	8.5	11.1
2007	8.5	12.7
2008	8.0	13.9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9	16.5	9.3
2010	11.6	11.4
2011	8.8	8.3
2012	8.3	11.9
2013	7.6	5.9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4. 관세사

라. 관세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관세사법」 제6조의216)에 따르면,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함

16)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관세사 1차 시험이 면제됨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관세사 1차 시험이 면제되고, 관세사 2차 시험 일부가 면제됨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별표 1의2¹⁷⁾에 따르면, ‘관세 행정 분야’는 기획재정부의 관세국, 관세청의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관세평가분류원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전 부서, 세관의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 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

17) [별표 1의2]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기관명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세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관세평가분류원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 부서
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 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감시소	전 부서

로 정한 부서, 감시소의 전 부서가 이에 해당함

- ☐ 즉 관세청 또는 세관 공무원, 기획재정부 관세국 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인 4과목이 모두 면제됨
-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18)에 따르면,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은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로 총 6과목임
- ☐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 시험 4과목 전부 면제뿐만 아니라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19)에 따라 2차 시험 4과목 중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2과목이 면제됨

18) [별표 1] 관세사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

<제1차 시험과목>

1.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한다)
2.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3.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한다)
4. 무역영어

<제2차 시험과목>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

19) 제5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은 관세사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총 4과목임

나. 시험면제자 현황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면제자의 수에 비하여 최종 합격 인원은 현저히 적음

[표 10] 관세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단위 : 명)

연도	1차 시험 면제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	최종 합격자
2003년	29	15	1
2004년	32	17	0
2005년	49	22	1
2006년	36	23	0
2007년	35	26	0
2008년	26	26	0
2009년	27	24	0
2010년	22	29	3
2011년	18	30	1
2012년	23	22	2
2013년	22	17	1

자료 : 관세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관세사 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경쟁률은 [표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음
- 1차 시험 경쟁률은 3:1 이상이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5:1 이상임

[표 11] 관세사 시험 경쟁률

(단위 : 명)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3	1,350	282	4.8:1	564	140	4.0:1
2004	1,678	320	5.2:1	587	75	7.8:1
2005	1,791	544	3.3:1	886	75	11.8:1
2006	1,506	395	3.8:1	926	75	12.3:1
2007	1,558	318	4.9:1	698	75	9.3:1
2008	1,522	469	3.2:1	774	75	10.3:1
2009	1,596	242	6.6:1	672	86	7.8:1
2010	1,765	187	9.4:1	439	75	5.8:1
2011	1,894	225	8.4:1	436	75	5.8:1
2012	2,055	274	7.5:1	516	75	6.8:1
2013	2,689	539	5.0:1	819	77	10.6:1

자료 : 관세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관세사 시험의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과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을 비교하면 [표 12] 과 같음
-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에 비하여 시험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이 높은 해는 2010년, 2012년임

[표 12] 관세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단위 : %)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3	10.3	2.3
2004	4.5	0
2005	4.2	1.4
2006	5.0	0
2007	4.8	0
2008	4.9	0
2009	5.4	0
2010	4.0	5.9
2011	4.0	2.1
2012	3.6	4.4
2013	2.9	2.6

자료 : 관세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5. 공인회계사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²⁰⁾에 따르면, 회계 업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 중 1차 시험이 면제됨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가 해당자임
- 즉 5급 이상의 공무원이 3년 이상의 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6과목이 모두 면제됨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2²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를 포함한 총 6과목임

20)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격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별표 1] 제1차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2조제1항관련)

나. 시험면제자 현황

- ☐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무원 경력으로 인하여 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최종 합격된 경우는 없었음
- ☐ 공무원이 아닌 다른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최종 합격된 경우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명임

[표 13] 공인회계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단위 : 명)

연도	1차 시험면제자 수	최종 합격자
2003	4	0
2004	5	0
2005	6	0
2006	5	0
2007	7	0
2008	3	0
2009	0	0

과목	과목별배점	비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150점	기초소양을 검정함
경영학	100점	
경제원론	100점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100점	
세법개론	100점	
영어		

연도	1차 시험면제자 수	최종 합격자
2010	4	0
2011	3	0
2012	2	0
2013	0	0

자료 : 금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경쟁률은 [표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음

○ 1차 시험의 경쟁률은 2007년을 제외하고 3.5:1 이상이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은 2006년을 제외하고 3:1 이상임

[표 14] 공인회계사 시험 경쟁률

(단위 : 명)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3	14,565	2,036	7.2:1	3,600	1,003	3.4:1
2004	12,897	2,443	5.3:1	4,124	1,001	4.1:1
2005	10,052	1,109	9.1:1	3,141	1,004	3.1:1
2006	9,008	1,539	5.9:1	2,421	1,007	2.4:1
2007	4,444	1,847	2.4:1	2,825	830	3.4:1
2008	6,234	1,806	3.5:1	3,163	1,040	3.0:1
2009	9,102	1,922	4.6:1	3,256	936	3.5:1
2010	11,956	1,275	9.4:1	2,835	953	3.0:1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11	12,889	1,863	6.9:1	2,865	961	3.0:1
2012	11,498	2,184	5.3:1	3,520	998	3.5:1
2013	10,630	789	13.5:1	2,510	904	2.8:1

자료 : 금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 공인회계사 시험의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과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을 비교하면 [표 15] 와 같음
- ☐ 시험면제자 중 최종 합격된 경우가 없음

[표 15] 공인회계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단위 : %)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3	6.9	0
2004	7.8	0
2005	10.0	0
2006	11.2	0
2007	18.7	0
2008	16.7	0
2009	10.3	0
2010	8.0	0
2011	7.5	0
2012	8.7	0
2013	8.5	0

자료 : 금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6. 공인노무사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²²⁾에 따르면,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 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그 과목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목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의2²³⁾에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

22) 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7조의2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한다)와 그 소속 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다.

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 됨

○ 그 외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24)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1)과 노동법(2)가 면제됨

□ 즉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경력의 정도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 1차 시험 과목 6과목 모두 또는 일부가 면제되고, 1차 시험 외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25)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배점이 가장 많은 노동법까지 면제됨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226)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24)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②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5)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26) [별표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제1차시험(6과목)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비고(출제 범위)
필수 과목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비고(출제 범위)
(5)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영어	-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경영 학개론 중 1과목	100점	

비고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비고(출제 범위)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경영조직론·노동경	100점	

자격 1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인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와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으로서 총 6과목임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 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또는 노동경제학 또는 민사소법 중 1과목으로 총 4과목인데, 4과목 중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이고, 그 나머지 과목의 배점은 각 100점임

나. 시험면제자 현황

-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 면제자 수에 비하여 최종 합격자의 수가 현저히 적음
- 시험면제자가 최종 합격한 해는 2003, 2004, 2010년임

[표 16] 공인노무사 시험면제자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자 수

(단위: 명)

연도	1차 시험 일부 면제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	최종 합격자
2003년	6	18	2
2004년	5	14	3

구분	과목	과목별 배점	비고(출제 범위)
과목 (1)	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연도	1차 시험 일부 면제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	최종 합격자
2005년	4	13	0
2006년	3	8	0
2007년	6	7	0
2008년	6	8	0
2009년	6	6	0
2010년	4	5	1
2011년	3	4	0
2012년	3	1	0
2013년	1	3	0

자료 : 고용노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 공인노무사 시험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경쟁률은 [표 17] 에서 보는
바와 같음
- 1차 시험의 경쟁률은 2010, 2011년으로 제외하고 2:1 이상이고, 2차 시험
경쟁률은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8:1 이상임

[표 17] 공인노무사 시험 경쟁률

(단위 : 명)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3	1,816	487	3.7:1	837	61	13.7:1

연 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원수 접수자	합격자	경쟁률
2004	2,188	412	5.3:1	849	286	3.0:1
2005	2,842	755	3.8:1	1,036	131	7.9:1
2006	3,950	1,330	3.0:1	1,963	122	16.0:1
2007	4,235	1,342	3.2:1	2,155	230	9.4:1
2008	5,262	981	5.4:1	1,853	206	9.0:1
2009	6,346	1,480	4.3:1	2,013	250	8.0:1
2010	2,902	1,493	1.9:1	2,387	251	9.5:1
2011	3,275	1,786	1.8:1	2,612	250	10.4:1
2012	3,265	1,084	3.0:1	2,277	250	9.1:1
2013	3,341	1,602	2.1:1	2,185	250	8.7:1

자료 : 고용노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 공인노무사 시험의 전체응시자의 최종합격률과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을 비교하면 [표 18] 과 같음
- 2003, 2004, 2010년의 경우 시험면제자의 최종합격률이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보다 높음

[표 18] 공인노무사 시험 전체응시자 및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단위 : %)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3	3.4	8.3
2004	13.0	15.8

연 도	전체응시자 최종합격률	시험면제자 최종합격률
2005	4.6	0
2006	3.0	0
2007	5.4	0
2008	3.9	0
2009	3.9	0
2010	8.6	11.1
2011	7.6	0
2012	7.7	0
2013	7.5	0

자료 : 고용노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2014

7. 자격시험별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 자격시험별로 면제되는 대상 및 과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9] 시험면제대상 및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 면제 대상	1차 및 2차 일부시험 면제 대상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변리사	○특허행정사무 -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	필수(3):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1) : 저작권법 등 19과목

구분	1차 시험 면제 대상	1차 및 2차 일부시험 면제 대상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법무사	○법원·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등가·검 검·마약수사직렬 -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 공무원	- 헌법과 상법 - 민법과 호적법 - 민사집행법과 비 송사건절차법 -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	- 민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과 민사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 부동산등기법과 등 기신청서류의 작성
세무사	○국세행정사무 -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지방세행정사무 - 10년 이상 이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 20년 이상 근무 공무원 ○군의 경리업무 - 대위이상 경리병 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자	- 10년이상 이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 20년 이상 근무 공무원	- 재정학 - 회계학개론 - 세법학개론 - 상법 - 상법·민법·행정 소송법 중 택 1 - 영어	- 세법학 1부 - 세법학 2부 - 회계학 1부 - 회계학 2부
관세사	○ 관세행정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 10년 이상 이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 20년 이상 근무 공무원	- 행정법개론 - 관세법개론 - 대외무역법과 외 국환거래법 - 무역영어	- 관세법, - 관세율표과 상품학 - 내국소비세법 - 무역실무

구분	1차 시험 면제 대상	1차 및 2차 일부시험 면제 대상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공인 회계사	○ 세무회계사무 등 - 5급 이상 3년 이상 근무 공무원 ○ 군의 경리·회계 감사사무 - 대위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근무자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공인 노무사	○ 노동행정사무 -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 10년 이상 이종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 15년 이상 이종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근무 공무원	노동법 1 노동법 2 경제학원론 민법 영어	필수(3) : 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 선택(1)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행정쟁송법 중 택1

III. 외국의 입법례²⁷⁾

1. 일본

-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법무사법」에 해당하는 사법서사법에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변리사법, 세리사법, 통관업법,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 ☐ 일본의 경우 공인노무사라는 직종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사회보험노무사법에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가. 변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일본 변리사법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경우 변리사 시험 없이 변리사가 될 자격을 부여받거나, 시험을 일부 면제 받는 경우가 있음
- ☐ 변리사법 제7조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 심판 또는 심사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7년인 경우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 변리사 될 자격을 부여받게 됨
-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방식 중 자동자격부여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27) 해당 법률은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 변리사법 제11조에서 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면제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함. 그 중에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관한 사항이 있음
- 변리사법 제11조 제5호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심판 또는 심사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공업소유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법령과 조약에 관한 시험이 면제됨
- 일본의 경우 변리사 시험은 단답식 시험, 논문식 시험,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답식 시험이 우리의 1차 시험에 해당하고 논문식 시험이 2차, 구술시험이 3차 면접에 해당하는 것임
- 단답식 시험 과목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법령 및 조약,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임
- 논문식 시험은 필수과목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법령 및 법률계과목(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지적재산관련 경쟁법, 국제사법, 행정법)과 기술계과목(지구과학, 기계공학, 물리공학, 정보통신공학, 응용화학, 바이오테크놀러지) 중 1과목의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짐
- 구술시험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즉 특허청 공무원 경력이 통산 5년 이상인 자의 경우 1차 시험 전부 면제 등과 같은 형태가 아닌 특정한 과목을 면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단답식시험, 논문식시험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시험이 면제되는 형태로 되어 있음

나.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우리나라 세무사법에 해당하는 일본 세리사법 제8조가 경력에 따른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임. 그 중에 조세 관련 공무원의 경력으로 인한 일부 과목 면제 조항이 있음
- ☐ 일본 세리사법에 따른 시험 면제 특징은 관공서에서 어떠한 종류의 사무를 하였느냐에 따라 필요한 경력 기간이 각기 다르고 경력 기간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 또한 각기 다르다는 것임
- 관공서에서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또는 국세의 입안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세법 과목 중 국세에 관한 시험을 면제함(4호)
 - 세리사법 제6조에 따르면, 세리사법 시험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소비세법(또는 주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중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에 관한 부분(또는 지방세법 중 사업세에 관한 부분), 지방세법 중 고정자산세에 관한 부분 총 7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고 회계학 중 부기론 및 재무제표론을 시험과목으로 함
- 관공서에서 국세의 부과 또는 국세의 입안 외의 사무에 종사한 자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경우 국세에 관한 시험을 면제함(5호)
- 관공서에서 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사업세나 고정자산세의 부과 또는 지방세 법률의 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경우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지방세 과목을 면제하고(제6호), 15년 이상인 자의 경우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을 모두 면제함(제8호)
- 관공서에서 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 사업세나 고정자산세의 부과 또는

지방세 법률의 입안에 관한 사무 외의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지방세 과목을 면제하고(7호), 20년 이상인 자의 경우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을 모두 면제함(제9호)

- 위에서 본 세법 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자 중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하거나 고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에 통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국세심의회가 지정한 연수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회계학까지 면제함(제10호)
-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3년 이상이 되는 자(가목)
- 제7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8년 이상이 되는 자(나목)
- 가목에 규정하는 기간을 통산한 연수의 23분의 28에 상당하는 연수와 나목에 규정하는 기간을 통산한 연수를 합계한 연수가 28년 이상이 되는 자(다목)

다. 통관업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우리나라 「관세사법」에 해당하는 통관업법 제24조에 따르면, 통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통관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됨
- ☐ 통관업자의 통관업무 또는 세관의 사무 및 그 감독에 관계되는 사무로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계적인 사무 외의 것에 종사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및 기타 기관에 관한 법률, 외

환 및 외국무역법, 통관서류의 작성요령 및 기타 통관수속의 실무 과목이 면제됨

- ☐ 통관업자의 통관업무 또는 세관의 물품 통관 사무(감독에 관계되는 사무 포함)로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계적인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는 관세법, 관세정률법 및 기타 기관에 관한 법률, 외환 및 외국무역법 과목이 면제됨
- ☐ 통관업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통관사 시험 과목은 관세법,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외환 및 외국무역법, 통관서류의 작성 요령 기타 통관절차의 실무, 통관업법임
- ☐ 단답식과 객관식이 혼합된 형태의 1차 시험만 있음

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일본 공인회계사법에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규정이 없음
- ☐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9조와 제10조에서 ‘고등시험 본시험’ 합격자의 경우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선택형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인 논술형 시험 과목 중 고등시험 본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고등시험은 1948년에 폐지된 제도로써 현재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임
- ☐ 고등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로 구분되어 각기 실시되고 있음

마.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직종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직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험관리사와 유사함
- ☐ 우리나라에서 공인노무사를 도입하면서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법을 모델로 삼았음
- ☐ 사회보험노무사법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노동 또는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시험 과목 일부가 면제됨
- ☐ 사회보험노무사법 별표 2에서 면제되는 과목과 면제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사무의 종류에 따라 면제과목이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 ☐ 사회보험노무사법 제9조에 따르면, 사회보험노무사법 시험과목은 ①노동기준법및노동안전위생법, ②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③고용보험법, ④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⑤건강보험법, ⑥후생연금보험법, ⑦국민연금법, ⑧노무관리및노동·사회보험에 관한 일반 상식 등으로 총 8과목임
- ☐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은 객관식인 1차 시험만 있음

2. 독일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독일의 경우 법무사, 관세사, 노무사라는 직종은 존재하지 아니함
- ☐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에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무사법에서는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 ☐ 독일 세무사법 제38조에 따르면, 조세사건 담당 판사 또는 고위공직자로서 연방세 또는 주세에 관련된 일에 종사한 경우는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독일의 세무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3일에 걸쳐 매 6시간 3개 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짐
 - 시험분야는 조세절차법,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와 유통세, 민법 및 경제법 개론, 경영학 및 회계제도, 국민경제, 취업법임
- ☐ 10년 이상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또는 15년 이상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관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의 경우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 독일의 경우는 행정부 공무원 외에 판사, 입법기관 공무원에 대하여도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10년 이상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전직 조세사건 담당 판사의 경우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연방 및 주 입법기관, 최고회계감사원 및 그 밖의 연방 또는 주 최고관청에서 최소 10년 이상 주로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

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자는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 연방 및 주 입법기관, 조세법원, 최고회계감사원 및 최고관청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주로 조세분야의 담당관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자는 세무사 시험이 면제됨.

3. 미국 연방규칙에 따른 시험면제제도

- ☐ 미국의 경우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라는 직종은 존재하지 않음
 - 법무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paralegal’(준법률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종이 있는데 이를 법무사와 유사한 것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음
 - ‘paralegal’은 로펌에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지원하는 직책으로 반드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무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대학 등에서의 정식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증 취득한 경우 경쟁력이 있는 정도임
- ☐ 관세사 및 공인회계사 관련 법에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변리사에 관한 법에서만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 ☐ 미국 연방 규칙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하 ‘CFR’이라 함)에서는 특허청 공무원의 경력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2004년 7월 26일 기준으로 심사경력이 4년 이하이고 퇴직 당시에 심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4가지 요건 : ①퇴직 당시 심사 부서에서 심사관으로 실제로 근무하여야 함, ②법률적 능력과 협상 능력에 대한 인증서 획득, ③인증서 획득 이후 심사관으로써 재직한 마지막 두 회계연도 동안 법률적 능력 및 협상 능력에 대한 심사평가가 적어로 ‘충분한 만족’(fully successful)이라는 평가가 있을 것, ④심사관으로서 근무할 당시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받지 않았을 것
- 2004년 7월 26일 기준으로 심사경력이 4년 이상이고 퇴직 당시에 심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의 ② 요건을 제외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특허 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특허청에 청원을 하여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2가지 요건 : ①자신이 특허관련 법령 변경,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심사기준 변경, 특허심사관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 작성 혹은 변리사 시험문제 출제 등 특허 심사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를 하였거나, 연방 법원에서 특허청을 대표하여 특허소송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이 특허출원 또는 기타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증명할 것, ②재직한 마지막 두 회계연도 평가가 적어로 ‘충분한 만족’(fully successful)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근무할 당시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받지 않았을 것
- 변리사 등록 시험은 특허법, 특허법 규칙 및 특허심사기준에 대한 내용 및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에 관한 선다형 100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근무기간 중심의 자격시험 면제조건과 광범위한 면제

- ☐ 우리나라 국가자격시험에서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경력 요건은 사실상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 ☐ 공무원의 업무경력과 관련 있는 시험과목을 자격시험의 면제과목으로 정하여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이 특정부처에서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된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만 담당하면 그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실상 해당 부처에서 일정기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시험 면제가 가능함
 - 변리사 : 특허행정사무
 - 법무사 :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등의 직
 - 세무사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에 관한 행정사무
 - 관세사 : 관세행정분야
 - 공인회계사 : 기업회계 등에 관한 사무
 - 공인노무사 : 노동행정
- ☐ 일본 세리사법의 경우 ‘국세의 부과 등’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비교됨
- ☐ 시험 면제 정도²⁸⁾가 전문성이나 직무관련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

라 어느 정도는 계급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 계급 이상으로 근무해야 시험 면제 정도가 유리함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되는 근무기간을 보다 단기(短期)로 하거나, 시험의 면제 범위를 확대해주고 있음

- 예컨대, 변리사 시험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5급 이상 등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음

○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직무연관성 중심보다는 근무기간과 계급 중심으로 시험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더욱 부각됨

- 미국 변리사의 경우,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였을 것, 법률적 능력 또는 자격 등을 증명하였을 것, 법률적 능력 등에 관한 평가가 ‘충분한 만족’일 것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즉, 미국에서는 특정 계급에서의 근무 여부가 시험 면제 요건이 되거나 시험면제 정도의 차등 요소가 되지 않음

□ 시험 면제 형태를 살펴보면, 해당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차 시험 면제’와 같이 포괄적인 시험 면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시험과목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1차 시험을 모두 면제해주고 있는데, 직무연관성이 없는 1차 과목까지 모두 면제되고 있고, 2차 시험 면제 과목의 경우도 직무와

28) 1차 시험만 면제할 것인가 아니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 일부까지 면제할 것인가의 정도를 말함

연관된 과목의 면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 외국의 경우 포괄적인 시험 면제가 아닌 과목 중심의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이 시험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음
 - 일본의 경우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1차 시험 전체와 같은 포괄적인 면제 형태가 아닌 해당 경력에 맞는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경력 정도를 세분화하여 경력에 맞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업무능력을 입증할 만한 인증서 및 평가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나.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

- ☐ 공무원 경력에 따른 시험면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험 결격사유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규정하고 있음. 즉, 공무원 재직 당시 받은 경징계 처분을 시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음
- ☐ 관련 법령에서는 시험 결격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음
 - 「관세사법」 제5조, 「세무사법」 제4조, 「공인노무사법」 제4조, 「법무사법」 제6조, 「공인회계사법」 제6조
- ☐ 파면 또는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하고²⁹⁾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³⁰⁾, 경징계 모두를 시험결격사유로

29)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함

30)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안전부, 2011 : 2011년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총 징계 합계 2,653건 중에서 파면은 121건, 해임은 158건, 강등은 81건, 정직은 521건, 감봉은 642건, 견책은 1,130건이고, 파면 또는 해임은 총 징계건수 중 10.5%를 차지하고 있음

정하지 않는 것은 자질이 부족한 자에게까지 시험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는 일종의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높은 직업적 윤리관 또는 도덕성이 요구됨. 그런데 시험결격사유를 지나치게 완화하여 그 도덕성 등이 결여된 자가 쉽게 그런 자격사가 될 수 있도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2. 개선방안

가.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방식으로의 변경

- ☐ 자격시험의 면제요건을 해당부처 근무경력 기간 중심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간 중심으로 변경하여야 함
- 일정 계급 이상으로 근무해야 시험면제 정도가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실무 경험으로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실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이 시험을 면제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
- 공무원 계급이 아닌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전문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을 면제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면제받는 방식도 그의 업무범위에 맞는 일부 과목만을 면제하여야 함
-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의 면제와 같은

포괄적 시험면제 방식이 아니라, 경력공무원으로서 시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시험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실제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시험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임
- 시험 면제 요건이 구체적인 업무 중심으로 변경되고 그에 맞는 과목만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 면제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면제 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처에 의해 면제 과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도 해당 법률을 통하여 면제되는 과목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 국민들보다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스스로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시험결격사유의 강화

- 시험결격사유를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징계도 이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부여되는 복리후생적인 제도인 만큼 공무원로서의 근무 태도나 소양이 충분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이 타당함
 - 미국의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경고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결격사유를 ‘면직’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공무원 징계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함

V. 결 론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공무원 복리를 위하여 시작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60년대에 도입되었음
-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1차 시험만을 면제해주고 있고, 나머지 시험에 있어서는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시험 면제 또는 2차 시험 일부가 면제됨
- 공인회계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 중에서 최종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음
 - 법무사, 세무사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에 비하여 최종합격자가 다소 많은 편임
-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은 변리사법, 세리사법, 통관업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면제요건과 면제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면제요건을 구체적인 담당 업무로 규정하고, 면제방식도 업무와 연관성이 과목으로 되어 있음
- 독일은 세무사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변리사시험에 있어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면제요건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업무를 통한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시험면제요건 및 면제방식이 불합리하고, 시험결격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음
- 시험면제요건이 계급과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면제 방식도 과목 면제가 아닌 시험 전체를 면제시켜주는 포괄적 방식임
- 시험결격요건이 ‘파면 또는 해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 국민들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직업으로서 공무원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면서 최초의 입법 취지만으로는 제도의 존치가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불법적인 로비 활동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동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존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공무원 복리 후생 측면에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의 전문 경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임
- 시험면제요건의 개선과 시험결격사유의 강화를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서의 성격을 불식시키고,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시험면제요건을 해당 부처의 근무경력 기간 중심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기간 중심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시험면제의 방식도 포괄적인 시험 전체가 아닌 업무와 연관된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무원에 대한 혜택인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나 소양이 충분한 자에게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시험 결격 사유에 경징계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 향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1999.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2000.
- 금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 기획재정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 관세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 법원행정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 특허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2.
-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사 통계』, 행정안전부, 2011.

[부록] 관련 해외 법률

1. 일본

가. 변리사법

□ 변리사법 제7조, 제11조

제7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의2 제1항의 실무수습을 수료한 경우 변리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2. 변리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
3. 특허청에서 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 심판 또는 심사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7년 이상인 자

제11조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해, 각각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단답식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 : 해당 단답식에 의한 시험과 관련되는 합격 발표의 날로부터 기산해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실시하는 단답식에 의한 시험
2. 논문식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성적을 얻은 자 : 해당 논문식에 의한 시험과 관련되는 합격 발표의 날로부터 기산해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해당 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논문식에 의한 시험
3. 논문식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과목

에 대하여 심의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성적을 얻은 자 : 그 후에 해당 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논문식에 의한 시험

4. 학교교육법에 근거하는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며, 해당 대학원에 있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과목의 단위를 습득한 자 : 해당 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기산해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단답식에 의한 시험

5. 특허청에 대해 심판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자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 및 조약에 대해 실시하는 시험

6. 전조 제2항 제2호의 수험자가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자 : 해당 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논문식에 의한 시험

나. 세리사법

☐ 세리사법 제8조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의하여 세무사 시험에서 당해 각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대학 등(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또는 동법 제10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 과정을 두는 교육 시설을 말한다. 호에서 같다)에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의

교수, 준교수 또는 강사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및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2. 대학 등에서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의 교수, 준교수 또는 강사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및 회계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논문식에 의한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에 관하여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4. 관공서의 사무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또는 주세의 부과 또는 이들의 국세에 관한 법률의 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 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에 관한 것

5. 관공서의 국세에 관한 사무 중 전호에 규정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에 종사 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인 자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에 관한 것

6. 관공서의 사무 중 도부현민세 (도민세를 포함), 시정촌민세 (특별 구민세 포함), 사업세 또는 고정자산세의 부과 또는 이들의 지방세에 관한 법률의 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 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지방세에 관한 것

7. 관공서의 지방세에 관한 사무 중 전호에 규정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에 종사 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인 자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지방세에 관한 것

8. 제6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인 자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9. 제7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0년 이상인 자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10. 다음에 열거하는 자, 관공서의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또는 감독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직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고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직으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재직 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자 중, 국세심의회의 지정된 연수(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연수 중 국세심의회의 세무사 시험의 시험 과목 중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에 관하여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적을 얻은 자가 갖는 학식과 동등한 정도의 학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를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가.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3년 이상이 되는 자

나. 제7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 한 기간이 통산하여 28년 이상 되는 자

다. 가목에 규정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의 23분의 28에 상당하는 연수와 나목에 규정된 기간을 통산한 연수를 합계한 기간이 28년 이상 되는 자

② 전항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사무 중, 시험 면제 과목을 같이하는 직 또는 사무의 2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직 또는 사무 내용이 호에 규정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비율에 따라 연수를 환산하여 이러한 직 또는 사무의 2 이상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 한 경우,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청은 세무사 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8호 또는 제9호에 규정하는 직 또는 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 또는 사무에 종사 한 기간을 세

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에 관한 것 또는 지방세에 관한 것 중 하나를 면제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 한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통관업법

☐ 통관업법 제24조

제24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통관사 시험에서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통관업자의 통관업무 또는 관청에서의 관세 기타 통관한 사무로 정령이 정하는 것에 종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과목
2. 통관업자의 통관업무 또는 관청에서의 통관사무로 정령이 정하는 것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자 : 제2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과목

☐ 통관업법 시행령(정령 제237호) 제11조

제11조 ①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정령이 정하는 업무 또는 사무는 통관업자의 통관업무 또는 세관의 사무 및 그 감독에 관계되는 사무로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계적인 사무 이외의 것으로 한다.

②법 제24조 제2호에 규정된 정령이 정하는 업무 또는 사무는 통관업

자의 통관업무 또는 세관의 물품 통관 사무(그 감독에 관계되는 사무를 포함한다)로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계적인 사무 이외의 것으로 한다.

라.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0조

제9조 ①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따라 단답식에 의한 시험을 면제한다.

1. 학교교육법(쇼와 이십년 법률 제26호)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구 대학령(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에 의한 대학 (예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 고등학교령 (다이쇼 7년 칙령 제389호)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과 또는 구 전문학교령 (메이지 316년 칙령 제60호)에 의한 전문학교에서 세 년 이상 상학에 속하는 과목의 교수 또는 부교수 직에 재직한 자나 상학에 속하는 과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2.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구 대학령에 의해 대학 이전 고등학교령에 의해 고등학교 고등과 또는 구 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에서 3년 이상 법학에 속하는 과목의 교수 또는 부교수 직에 재직한 자 또는 법학에 속하는 과목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3. 고등시험 본시험에 합격 한 자

4. 사법 시험에 합격 한 자

제10조 ①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

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과목, 논문 식에 의한 시험을 면제한다.

1. 전조 제1항 제1호의 자 : 회계학 및 경영학
2. 전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자 : 기업법 및 민법
3. 전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시험 본시험에서 응시한 과목 (해당 과목이 상법 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법)
4.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구 대학령에 의해 대학 이전 고등학교령에 의해 고등학교 고등과 또는 구 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에서 3년 이상 경제학에 속하는 과목의 교수 또는 부교수 직에 재직한 자 또는 경제학에 속하는 과목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 경제학
5. 부동산 감정사 시험에 합격 한 자 : 경제학 또는 민법
6. 세무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 : 조세법
7.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응용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 정령으로 정하는 과목

마. 사회보험노무사법

☐ 사회보험노무사법 제11조

제1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별표 제2 중란의 사회보험노무사 시험과 목에 대해서는 당해 우측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각각 그 신청에 의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 사회보험노무사법 별표 2

번호	면제 과목	면제자격자
1	노동 기준 법 및 노동 안전 위생 법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노동 제반법령(별표 제1제1호에서 제20호의20까지의 법률 및 이들 법률에 입각한 명령과 행정불복심사법(동표 제1호에서 제20호의19까지의 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입각한 명령에 관련된 불복신청일 경우를 한함)을 말함. 이하 동일함)의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2. 국가공무원으로 노동기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또는 노동안전위생법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3. 후생노동성 장관이 노동기준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에 대하여 이 호의1 및 2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2	노동 자재 해보 상보 험법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사회보험 제반법령(별표 제1의제21호에서 제31호까지의 법률 및 이들 법률에 입각한 명령과 행정불복심사법(동표 제21호에서 제31호까지의 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입각한 명령에 관련된 불복신청인 경우를 한함)을 말함. 이하 동일함)의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차호 1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및 노동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목에 대하여 시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노동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번호	면제 과목	면제자격자
		3. 노동 혹은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에 관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무(이하 ‘노동사회보험법령 사무’)를 행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 후보자로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연합회 강습수료자(차호 3 및 제4호의3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및 노동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목에 대하여 시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4. 국가공무원으로 노동기준법 또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5. 노동자재해보상보장심사관 재직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 6. 후생노동성 장관이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본호의 1에서 5까지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3	고용 보험 법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사회보험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전호 1 및 차호 1에 해당하는 자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및 노동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번호	면제 과목	면제자격자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노동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3.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를 행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 보조자로서 노동사회보장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로 대표가 되는 부의 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연합회 강습수료자(전 호 3 및 차 호 3에 해당하는 자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및 노동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고용보험법 또는 직업안정법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5. 고용보험심사관 재직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 6. 후생노동성 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본 호의 1에서 5까지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4	노동 보험 보험 료징 수 등에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사회보험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제2호1 및 전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노동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번호	면제 과목	면제자격자
	관 한 법 률	3.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를 행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 후보자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이며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연합회 강습수료자(제2호의3 및 전 호3에 해당하는 자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노동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5. 후생노동성 장관이 노동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본 호1에서 4까지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5	건강 보험 법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사회보험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건강보험법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3. 사회보험심사관 재직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 4. 후생노동성 장관이 건강보험법에 대하여 본 호1에서 3까지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6	후생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사회보험 제반법령

번호	면제 과목	면제자격자
	연금 보험 법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노동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차 호 2에 해당하는 자로 국민연금법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3.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를 행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 후보자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이며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연합회 강습수료자(차 호3에 해당하는 자로 국민연금법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후생연금보험법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5. 사회보험심사관 재직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 6. 후생노동성 장관이 후생연금보험법에 대하여 본 호1에서 5까지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7	국민 연금 법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사회보험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노동 제반법령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전 호 2에 해당하는 자로 후생연금보험법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

번호	면제 과목	면제자격자
		외함) 3.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를 행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 후보자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이며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연합회 강습수료자(전 호 3에 해당하는 자로 후생연금보험법 과목에 대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는 자를 제외함)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국민연금법 시행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5. 사회보험심사관 재직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자 6. 후생노동성 장관이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본 호1에서 5까지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8	노무 관리 및 기타 노동 및 사회 보험	1.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를 행하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혹은 종업원으로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 후보자로서 노동사회보험법령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연합회 강습수료자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으로 후생노동성 소장사무에 속하는 행정사무 종사기간, 후생노동성 장관이 소관하는

번호	면제 과목	면제자격자
	에 관한 일반 상식	특정독립행정법인 임직원으로서 행정사무에 상당하는 사무 종사기간 및 특정지방 독립행정법인 임직원으로서 후생노동성 소장사무에 속하는 행정사무에 상당하는 사무 종사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3. 후생노동성 장관이 노무관리 및 기타 노동 및 사회보험에 대하여 본 호의 1 및 2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하는 자

2. 독일

☐ 세무사법 제38조

제38조 시험면제요건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시험을 면제한다.

1. 독일대학에서 최소 10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장하는 조세분야에서 강의를 담당하였던 교수
2. 최소 10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전직 조세사건 담당 판사
3. 전직 고위공무원 및 공직종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a) 적어도 10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 b) 연방 및 주 입법기관, 최고회계감사원 및 그 밖의 연방 또는 주 최

고관청에서 최소 10년 이상 주로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 분야에서 담당과장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자.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 소속직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4. 전직 고위공무원 및 공직 종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a) 적어도 15년간 연방 또는 주 재무관청이 관할하는 조세분야에서 담당관 또는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세무공무원

b) 연방 및 주 입법기관, 조세법원, 최고회계감사원 및 최고관청에서 최소 15년 이상을 주로 조세분야의 담당관 또는 적어도 이와 동등한 지위에서 활동한 자.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 소속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입법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②시험허가에 관한 제37조 및 제37d조의 규정은 시험면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및 공무원 교육과정인 국가행정교육전문학교의 교수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또는 독일연방하원의 각 정당의 소속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없다.

3. 미국

☐ 미국 연방 규칙 37CFR 11.7(d)

37 CFR 11.7 -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d) Waiver of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Former Office Employees—(1) Former patent examiners who by July 26, 2004, had not

actively served four years in the patent examining corps, and were serving in the corps at the time of their separation. The OED Director may waive the taking of a registration examination in the case of any individual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1)(i)(C) of this section who is a former patent examiner but by July 26, 2004, had not served four years in the patent examining corps, if the individual demonstrates that he or she:

(i) Actively served in the patent examining corps of the Office and was serving in the corps at the time of separation from the Office;

(ii) Received a certificate of legal competency and negotiation authority;

(iii) After receiving the certificate of legal competency and negotiation authority, was rated at least fully successful in each quality performance element of his or her performance plan for the last two complete fiscal years as a patent examiner; and

(iv) Was not under an oral or written warning regarding the quality performance elements at the time of separation from the patent examining corps.

(2) Former patent examiners who on July 26, 2004, had actively served four years in the patent examining corps, and were serving in the corps at the time of their separation. The OED Director may waive the taking of a registration examination in the case of any individual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1)(i)(C) of this section who is a former patent examiner and by July 26, 2004, had served four years in the patent

examining corps, if the individual demonstrates that he or she:

- (i) Actively served for at least four years in the patent examining corps of the Office by July 26, 2004, and was serving in the corps at the time of separation from the Office;

- (ii) Was rated at least fully successful in each quality performance element of his or her performance plan for the last two complete fiscal years as a patent examiner in the Office; and

- (iii) Was not under an oral or written warning regarding the quality performance elements at the time of separation from the patent examining corps.

(3) Certain former Office employees who were not serving in the patent examining corps upon their separation from the Office. The OED Director may waive the taking of a registration examination in the case of a former Office employe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1)(i)(C) of this section who by petition demonstrates possession of the necessary legal qualifications to render to patent applicants and others valuable service and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osecution of their applications or other business before the Office by showing that he or she has:

- (i) Exhibited comprehensive knowledge of patent law equivalent to that shown by pass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as a result of having been in a posi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Office in which he or she:

- (A) Provided substantial guidance on patent examination polic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rule or procedure changes,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changes to th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development of training or testing materials for the patent examining corps, or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or

(B) Represented the Office in patent cases before Federal courts; and

(ii) Was rated at least fully successful in each quality performance element of his or her performance plan for said position for the last two complete rating periods in the Office, and was not under an oral or written warning regarding such performance elements at the time of separation from the Office.

(4) To be eligible for consideration for waiver, an individual formerly employed by the Office within the scope of one of paragraphs (d)(1), (d)(2) or (d)(3) of this section must file a comple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pay the fee required by § 1.21(a)(1)(i) of this subchapter within two years of the individual's date of separation from the Office. All other individuals formerly employed by the Office, including former examiners,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fee more than two years after separation from the Office, are required to take and pass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The individual or former examiner must pay the examination fee required by § 1.21(a)(1)(ii) of this subchapter within thirty days after notice of non-waiver.

[NARS-----]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32호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4.6.20.	권 성 훈
제231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	2014.6.9.	하 해 영
제230호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5.27.	김 건 식
제229호	한류지수의 개선방향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	2014.5.9.	김 휘 정
제228호	2013 칠레 대선 결과와 시사점	2014.5.2.	김영일 이정진
제227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2014.3.18.	박영원 이주연
제226호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2014.2.12.	전 진 영
제225호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2014.1.27.	김영일 김종갑
제224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현황과 과제	2013.12.31.	이 승 현
제22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3.12.31.	조 주 은
제222호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	2013.12.31.	하 해 영
제221호	군 영창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3.12.31.	형혁규 김선화 김성봉
제220호	재판방송의 쟁점과 과제	2013.12.31.	조 규 범
제219호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를 지표 개선방안	2013.12.31.	김 주 경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18호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과제	2013.12.31.	원 시 연
제217호	가계 식품비를 이용한 식품 소비 복지지표의 개발	2013.12.31.	장 영 주
제216호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김 경 민
제215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박 주 연
제214호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2013.12.30.	조 주 현
제213호	코넥스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13.12.30.	김 정 주
제21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입법영향 분석	2013.12.27.	유 용 조
제211호	주요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2013.12.26.	이 현 출 임 채 진
제210호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	2013.12.26.	장 경 석
제209호	「최저임금법」 제6조5항[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26.	한 인 상
제208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13.12.26.	이 승 현
제207호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2013.12.20.	조 형 근
제206호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2013.12.19.	박 준 환
제20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18.	김 유 향 심 우 민
제204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3.12.18.	조 주 현 정 도 영 박 준 환
제203호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2013.12.17.	김 갑 식
제20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	2013.11.29	김 준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01호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3.11.15.	유재국
제200호	남북경협 의 현황과 과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13.11.7.	이승현
제199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013.9.26.	이동영
제198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	2013.8.21.	김영일 전진영
제197호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3.8.16.	김효연
제196호	핀란드 초·중등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013.8.5.	이덕난
제195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3.7.29.	유제범
제194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주택의 건설기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2013.7.24.	이창호
제193호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2013.5.6.	이만우 김영수
제192호	수도권규제관련 해외정책 동향과 과제	2013.4.17.	이창호
제191호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심판관제도 개선방안	2013.4.5.	한석현 이재일
제190호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분석 및 자민당 정권의 주요 정책 전망	2013.3.13.	이현출 김유정
제189호	국가 수자원 조사 선진화 방안	2013.2.28.	이기하
제188호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2013.2.26.	김종갑
제187호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2013.2.20.	박기현
제186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3.2.19.	서동국 허원
제185호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 전망	2013.1.18.	김갑식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4호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1.15.	전 형 진
제18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3.1.14.	박영원
제182호	「국회법」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분석	2013.1.9.	전진영
제181호	「의료법」및「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2012.12.31.	김주경
제180호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12.31	이여진
제17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2.31	한인상
제178호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 과제	2012.12.31	이정윤 이승현
제177호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2012.12.31	유 의정 이덕난
제176호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2.12.31	조형근
제175호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2012.12.28	김휘정
제174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2012.12.27	이덕난 유지연
제173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효과 분석과 시사점	2012.12.26	최세중 김봉주
제172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2.12.6	조주현
제171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2012.12.5	한인상
제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1.23	김 준
제169호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2012.11.13	김선화
제168호	에너지·환경정책 관련 투자자 ISD 사례연구- 바텐팔 대 독일 정부의 경우	2012.11.8	최준영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67호	2012 미국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2012.11.5	이정진
제166호	「공직선거법」상의 SNS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10.18	김유향 심우민
제165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책	2012.10.12	김주경
제164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 조정을 중심으로	2012.9.14	이건목
제163호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2.9.13	이덕난
제162호	국민연금급여의 국가 지급책임과 연계한 기금운용 개선방향	2012.8.24	원종현
제161호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2.8.22	김여라
제160호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2012.8.8	김경민
제159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2012.7.13	이혜미
제158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12.6.25	조주은
제157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2012.6.15	유재국
제156호	제18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	2012.6.7	전진영
제155호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5.31	김유향 심우민
제154호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2012.5.17	전진영
제153호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2.5.14	박기현
제152호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2.5.10	조희정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51호	IT 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 추진 체계 개편 방향	2012.4.25	조 주현 정도영 유재국 김민지 박영원 조희정 심우민
제150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4.16	김 형 진
제149호	식품산업 산업연관분석과 정책방향	2012.4.6	장영주 정도영 김봉주
제148호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2.3.27	권순영
제147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2.3.26	김종갑
제146호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2012.3.23	조형근
제145호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2012.3.13	김휘정
제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12.2.21	원종현
제143호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2012.1.25	이승현

현안보고서 제233호

발 간 일 2014년 7월 2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4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0632-14

© 국회입법조사처, 2014

현안보고서 제233호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